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2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주민의 감사청구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1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10. 26. ~ 11. 15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6조” 를 “제21조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19세” 를 “18세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 수)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2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 수) ----- ----- ----- 18세 ----- ----- -----</p>

□ 지방자치법(22. 1. 13. 시행)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